|  |  |  |
| --- | --- | --- |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 가산공제비율 제고에 관한 통지**  재세[2017]3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과학기술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과학기술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입 확대를 더욱 장려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용(이하 “R&D비용”) 세전가산공제비율에 관한 유관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R&D비용이 무형자산으로 형성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계상되는 경우, 규정에 따른 사실 그대로의 공제원칙에 기초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제 발생액의 75%를 세전에 가산공제한다. 무형자산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상술한 동일기간에 무형자산 원가의 175%를 세전 상각한다.  2.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R&D비용세전 가산공제 정책을 향유하는 기타 정책 조건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비용 세전 가산공제정책을 완벽히 하는 것에 관한 통지>(재세[2015]119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조건과 관리방법은 과학기술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 발표한다. 과학기술, 재정과 세무부처는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여, 적시에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우대정책이 완전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과학기술부  2017년5월2일 |  | **关于提高科技型中小企业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比例的通知**  财税〔2017〕34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科技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科技局：  　　为进一步激励中小企业加大研发投入，支持科技创新，现就提高科技型中小企业研究开发费用（以下简称研发费用）税前加计扣除比例有关问题通知如下：  　　一、科技型中小企业开展研发活动中实际发生的研发费用，未形成无形资产计入当期损益的，在按规定据实扣除的基础上，在2017年1月1日至2019年12月31日期间，再按照实际发生额的75%在税前加计扣除；形成无形资产的，在上述期间按照无形资产成本的175%在税前摊销。  　　二、科技型中小企业享受研发费用税前加计扣除政策的其他政策口径按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 科技部关于完善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政策的通知》（财税〔2015〕119号）规定执行。  　　 三、科技型中小企业条件和管理办法由科技部、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另行发布。科技、财政和税务部门应建立信息共享机制，及时共享科技型中小企业的相关信息，加强协调配合，保障优惠政策落实到位。  财政部  税务总局  科技部  2017年5月2日 |